

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 활동상황

'92. 8. 17 ~ 9. 3

의사국 위원과

1428



정치관계법 심의특별위원회 현황

1992. 9. 3 현재

구 분	회의회수	구 성 위 원	비 고 (회의실)
전 체 회 의	2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8인 (민자 9, 민주 6, 국민 3) - 위원장 : 신상식 위원(민자) - 간 사 : 김종위 위원(민자) <li style="padding-left: 2em;">박상천 위원(민주) <li style="padding-left: 2em;">정장현 위원(국민) 	501 호 (동자위 회의실)
심 의	지방자치법등 개정심의반	신상식, 정시채, 강용식 (민자) 김봉호, 홍사덕 (민주) 윤영탁 (국민)	532 호
	대통령선거법등 개정심의반	이인제, 최재욱, 황윤기 (민자) 조순형, 박상천 (민주) 김진영 (국민)	535 호
반	정치자금법등 개정심의반	김종위, 김영진, 강재섭 (민자) 김덕규, 신기하 (민주) 정장현 (국민)	506 호

1. 전체회의

차수	일 자	회 의 경 과	비고
1	8. 17 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장 및 간사선임 - 위원장 : 신상식 위원 (민자) - 간 사 : 김종위 위원 (민자)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박상천 위원 (민주) <li style="padding-left: 40px;">정장현 위원 (국민) 	
2	8. 18 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- 3당 대표합의사항을 기본바탕으로 법안을 성안키로 함 - 3개법등 개정심의반 구성 - 전체회의 및 심의반은 전원 합의제로 운영키로 함 - 심의반의 1차 활동시한은 8월말 까지로 함 - 심의반은 매일 오전 10:00 에 개최하되, 사회는 위원순차로 하기로 함 	

2. 개정심의반 회의

가. 지방자치법등 개정심의반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고
1	8.18 (화)	○ 심의반 운영의 건 (합의사항 없음)	
2	8.19 (수)	○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 시기 - 민자당 입장 : '95. 6.30 일 이내 - 민주당 입장 : 하나는 대선과 동시, 나머지는 '93년 상반기 중 - 국민당 입장 :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를 먼저 10월 중순까 지, 불가능하면 대선과 동시 ※ 민주당이 공청회 및 TV토론회 개최를 제의하여 다시 논의기로 함	
3	8.20 (목)	○ 자치단체장 선거 실시시기 문제에 대한 각당의 기존입장 을 재확인	
4	8.21 (금)	"	
5	8.24 (월)	"	
6	8.25 (화)	"	
7	8.27 (목)	"	

차수	일자	회의경과	비고
8	8.28 (금)	○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시기, 공청회 또는 TV공개토론회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	민주당 위원불참
9	9. 1 (화)	○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한 각당의 기존입장 재확인	
10	9. 3 (목)	○ 단체장 선거시기 문제외의 조항들에 대하여도 심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음	민주당 위원불참

나. 대통령선거법등 개정심의반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1	8.18 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당의 시안이 마련될 때까지 「선거관리위원회 개정 의견」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함 	
2	8.19 (수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거사범의 벌금형량 "5만원" 을 "100만원"으로 상향조정 ○ 후보기탁금 "무소속 1억원, 정당추천 5천만원"을 구별없이 "3억원"으로 상향조정 ○ 선거인 명부 작성시 입회인을 읍.면 단위로 후보자별 1인을 허용하여 감독강화 ○ 후보자의 사퇴신고를 현행 "선관위에 서면신고"를 "본인이 직접 중앙선관위에 출석하여 서면 신고"토록 함 	
3	8.20 (목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거운동기간은 현행대로 "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" 로 함 ○ "선거사무원" 을 "선거운동원" 으로 명칭 변경 ○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제한 완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·형제자매(배우자 포함)는 선거운동 가능 - 국회의원의 보좌관·비서관은 선거운동원으로 신고한 후 선거운동원이 될 수 있도록 함 	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4	8.21 (금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설회 회수는 현행 "후보자연설회는 시.도별로 3회이내 연설회는 읍.면.동마다 1회이내" 를 "후보자 연설회와 연설회를 합하여 개표구마다 5회 이내" 로 축소함 ○ 고지벽보 연설회 1회에 "100매" 를 "200매" 로 확대 ○ 정견.정책집 발행.배부 (신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견정책집을 16절 70면이내에서 총세대수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부수이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○ 소형인쇄물 작성.배부 (신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소형인쇄물을 16절, 20면이내의 3가지를 총유권자수의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발행하고, 8절, 2면이내의 1가지를 총유권자수의 5분의 1의 범위내에서 발행 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이는 호별방문에 의하여 배부할 수 있도록 함 ○ 선전현판과 홍보용게시판 (신설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거사무소·연락소에 선전현판을, 선거사무소·연락소의 입구 또는 10m 거리안에 홍보용 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○ 공개된 장소에서의 개별면접을 통한 정당 및 후보자 지지 호소 허용 ○ 유선방송을 이용한 정견발표 허용 ○ 일간신문을 통한 정견.정책광고를 5회 이내로 허용 	

차수	일자	회의경과	비고
5	8.22 (토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선거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금지대상에 "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" 을 추가 ○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 표방 금지 ○ 허위논평·보도의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행 허위사실 보도, 사실의 왜곡보도, 논평금지 규정에 "선거운동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, 반대하거나 논평을 하는 행위의 금지" 규정을 추가 ○ 탈법방지를 위한 저술등의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거운동 기간중 정당, 후보자를 지지.추천.반대하는 내용이 일부라도 포함된 저술.연예.영화.광고.사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법적이외의 방법으로 배부.상연.게시할 수 없도록 함. 	
6	8.24 (월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타연설회의 개최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중에 법정연설회 이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연설회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함. ○ 각종집회의 제한규정중 "단합대회(정당활동은 제외한다)" 라는 문구에서 "(정당활동은 제외한다)" 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정당활동 허용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자는 선관위 개정안에 대하여,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기로 함 ○ 행열 및 연호행위 금지규정 중 연설회장 안에서의 연호행위는 허용 	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7	8.25 (화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부행위 제한규정 보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당과 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"당해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만 금지" 하고, 후보자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"일체의 기부행위를 금지" 함 - 제한되는 기부행위의 종류 추가 (입당원서 제출시.연설회 및 정당집회 참석시 금품제공, 선거운동원 이외의 자에 대한 대가 지급 등) -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의례적.직무상의 행위를 국회의원선거법과 동일하게 열거하여 규정함 (관혼상제, 단합대회 등) ○ 음식물 및 교통시설 편의제공 금지 규정 삭제 ○ 선거일 후 답례금지에 대하여 "축하.위로.향응" 외에 "기타의 이익" 을 추가함 	
8	8.26 (수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재자투표(우편투표)제도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관위가 설치한 우편투표소에서 우편투표자가 기표하면 이를 선관위가 확인.날인한 후 우체국장에게 인계하여 발송 - 법령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우편투표자가 우편투표소에 갈 수 없는 기관.시설에 대하여 선관위의 허가로 우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음 	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격.오지등의 근무자와 신체장애.상병 기타사유로 우편투표소에 갈 수 없는 자등은 거소투표방식으로 투표하고 외봉투에 본인의 기명.날인을 하도록 함 (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확인인도 필요) - 투표소설치지역, 투표사무종사원의 자격, 투표용지, 투표구선관위원장의 사인날인등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법규정과 형평을 맞춤 ○ 선거운동원에게는 일당을 주지않고 실비만 지급하기로 함 	
9	8.27 (목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투.개표 참관인의 수당을 국고부담으로 함 ○ 투표함의 인수인계 절차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표참관인은 투표구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 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함 ○ 투표소에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용지를 100매 이내에서 미리 사인을 찍어둘 수 있도록 함 ○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권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선관위 위원 및 직원은 불법선전물.시설의 철거.수거.폐쇄등을 명하고 불응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, -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그 중지.경고.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, 나아가 수사의뢰 및 고발도 할 수 있도록 함 	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10	8.28 (금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현행의 붓뚜껑에 "스"을 삽입한 기표용구를 사용키로 함 ○ 선거법 위반행위 처벌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소시효기간을 선거일후 6월(범인도피시는 3년)로 조정 - 선거법의 재판기간을 단기화하여 제1심은 공소제기일 부터 6월이내, 제2심 및 제3심은 전심판결의 선고일부터 각각 3월이내로 함 ○ 선거소송처리기간을 180일이내로 단축하고, 인지첨부액을 민사소송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함 ○ 선거법 형량의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년당 벌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 으로 - 각종 제한규정 위반시 10만원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를 100만원 이하로 - 선거물이꾼에 대한 벌칙 중 3년이하 징역, 150만원이하 벌금에서 5년이하 징역, 500만원 이하로 조정 - 금품수수자의 자수 감면제 도입(처벌면제) - 정견발표회장내의 행패자 중 주도자는 5년이상, 다른 사람을 지휘·술선하는 자는 3년이상, 부화뇌동한 자는 3년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형 부과조항 신설 ○ 흑백선전 규제 강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객체 : 타인 ---> 자기 또는 다른사람 - 공표대상 : 소속·사상·신분·직업 또는 경력등 ---> 소속·사상·신분·직업 또는 경력·행위·기타사항 	
11	8.29 (토)	○ 합의사항 없음	
12	8.31 (월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재자투표(우편투표)신고방법 개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군인, 병원등 수용소기거자, 선거사무 종사자는 소속기관 시설의 장의 확인서를, 	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장기여행자·거동불능자는 신고가 진정이라는 뜻의 선서서를 첨부하여 우편투표 사유신고를 하도록 함 ○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선거운동 준비행위, 정당의 통상적 활동등을 추가 	
13	9. 1 (화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시설을 이용한 연설 -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각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각5회(재방송 포함)이내, 매회 20분 이내에서 연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중 후보자 3회, 연설원 2회의 연설회는 국고부담으로 함 ○ 방송시설을 이용한 대담·토론시간 및 횟수를 120분, 3회로 하고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은 선관위규칙으로 함 ○ 정견·정책 신문광고 횟수는 4회로 정함 	
14	9. 2 (수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관한 선언적 규정 신설 ○ 여론조사(인기투표, 모의투표 포함)는 누구든지 시기에 관계없이 할 수 있되 그 결과의 발표는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고, 후보자 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그 명의를 밝혀 행하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투표방법으로 행하는 여론조사는 금지하기로 함 ○ 우편투표용지의 발송시기를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으로 하고 우편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기간을 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전 4일까지로 함 ○ 개표사무 종사원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직원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	
15	9. 3 (목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후보자별 득표수 발표전에 출석한 구·시·군 선관위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고 집계표에 서명·날인하도록 함 ○ 부재자신고(우편투표신고)대상자중 장기여행자 및 거동불능자의 선서서 제출을 삭제함 	

다. 정치자금법등 개정심의반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1	8.18 (화)	<p>< 합의사항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각당의 개정안을 심의반에 제출키로함 	
2	8.19 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3당 대표회담 내용중 "선거자금"표현에 대한 해석과 정치자금배분규정의 개정논의 	
3	8.20 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기탁금·후원회·국고보조금제도의 논의 	
4	8.22 (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기탁금제도의 개선 논의 - 민자당 입장 : 지정기탁금제도의 존치주장 - 민주당 입장 : 익명쿠폰제의 도입과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 	
5	8.24 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정기탁금제도의 개선 논의 - 민자당 입장 : 지정기탁금제도의 존치를 주장하고, 쿠폰제 도입에 대해서 계속 연구 - 민주당 입장 : 지정기탁금제도의 폐지, 익명쿠폰제의 도입 	
6	8.25 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쿠폰제 도입 논의 (합의사항 없음) 	

차수	일자	회 의 경 과	비 고
7	8.26 (수)	○ 쿠폰제 도입 논의 (합의사항 없음)	
8	8.27 (목)	○ 쿠폰제 도입 논의 (합의사항 없음) ○ 후원회의 집회모금 및 광고모금시 익명성 기부문제 논의 (합의사항 없음)	
9	8.29 (토)	○ 8. 31(월)일 간사회의 결과를 보고 논의키로 함	
10	9. 1 (화)	○ 쿠폰제 도입 논의 (합의사항 없음)	
11	9. 2 (수)	○ 후원회 제도 (쿠폰제 포함), 기탁금제도등 정치자금법상의 전반에 관하여 논의	
12	9. 3 (목)	○ 후원회 제도 논의 (합의사항 없음)	